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638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3. 제출일자 : 2025년 03월 31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04월 02일

II. 제안이유

-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가. 「규제혁신기획관(3급)」, 「규제개선담당관(4급)」 신설에 따라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조정
 - (본청) 3급 +1명, 4급 +1명, 5급 이하 △2명

Ⅳ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총정원의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 조정을 통해 신설 예정인 규제혁신기획관(3급)과 그 소속인 규제개선담당관(4급)의 정원을 각각 1명씩 확보하고자 제출됨.

2. 공무원 정원 조정의 적정성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조치로, 기획조정실에 규제혁신기획관(3급)과 그 소속으로 규제개선담당관(4급)을 신설하기 위해 3급 및 4급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을 2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임.

< 서울특별시 정원 조정 계획 >

◦ 총 정원 : 19,171명 ⇨ 19,171명 (변동 없음)

(단위 : 명)

구 분	총 정원	정무	일반	1급	2·3급	3급	3·4급	4급	4·5급	5급이하	전문 경력관	별정	연구	지도	소방	경찰	교육
현 행	19,171	4	10,700	7	26	25	3	269	2	10,207	161	37	410	25	7,434	7	554
개편 후	19,171	4	10,700	7	26	26	3	270	2	10,205	161	37	410	25	7,434	7	554
증 감	-	-	-	-	-	+1	-	+1	-	△2	-	-	-	-	-	-	-

◦ 기관별 정원 (변동 없음)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집행기관	소 방 공무원	교 육 공무원	의 회 사무처	합의제	합의제 경 찰	직속기관 경 찰
현 행	19,171	10,521	7,434	554	429	226	3	4
개정 후	19,171	10,521	7,434	554	429	226	3	4
증 감	-	-	-	-	-	-	-	-

※ 현행 : '25. 1. 1. 시행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기준

※ 합의제 경찰 : 자치경찰위원회 소속, 직속기관 경찰 : 서울소방방재센터 소속

- 이를 위해 서울시는 ▶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결원 조정, ▶유사기능 통합에 따른 감축, ▶사업 종료·축소 등 기능 쇠퇴 분야의 정원 감축을 통해 확보된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 17명¹⁾을 활용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종전 5급 이하 정원 2명과 3급 및 4급 정원 각 1명씩을 상계한 것임.
- 이와 같은 상하위직 간의 정원 상계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시 향후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목표에 따른 것으로, 서울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 채, 기구 신설이나 개편 시에 관리자급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지방기구정원 규정”)²⁾ 제29조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 동 규정 제30조는 지방 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문제는 없음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

1) 본청·사업소 정원(5급 3명, 6급 10명, 7급 4명)을 조정하여, 본청 정원(3급 1명, 4급 1명, 5급 3명, 6급 8명, 7급 4명)을 증원한 것으로 사실상 6급 2명을 감원하고 3급 및 4급 1명씩을 증원한 것임.

2)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,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행정기구를 설치, 개·폐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함.

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③ ~ ⑤ (생략)

- 다만 이러한 상하위직급 간 상계를 활용한 인력 운영은 관리자급 정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 현장 실무 및 운영 인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가분수 형태의 인력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.
- 한편 이번 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개선담당관의 신설에 따른 2025년도 서울시 인건비의 증가는 3천 7백만원 수준이며 향후 5년간 3억 5천 5백 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, 2025년도 서울시 기준인건비³⁾ 규모(2조 895억원)와 최근 3~4년간 서울시 인건비의 집행률이 평균 97%대 수준인 점을 고려 하면 인건비 예산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입법조사관	연락처
최범준	02-2180-8056

3) 지방기구정원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인건비의 한도액으로, 일반직, 소방직, 일반·시간선택·한시임기제, 실무수습공무원, 청경,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합산한 인건비성 경비의 한도액이며,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 등의 패널티가 부여됨.